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·개정 등 주요사항 일람표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1	법률 제1007호 (1962. 1. 20)	○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2	각령 제811호 (1962. 6. 12)	○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첨가물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 지정
3	각령 제1057호 (1962. 11. 27)	○ 두루찐 1품목 지정
4	각령 제1598호 (1963. 10. 8)	○ 브롬메칠, 요오드나트륨, 요오드칼슘 3품목 삭제
5	부령 제175호 (1966. 3. 23)	○ 40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18항목 일반시험법 신설 ○ 총칙, 제조기준 등 제정
6	대통령령 제2808호 (1966. 11. 26)	○ 식용색소등색제1호 등 10품목 삭제 ○ 글루콘산철 등 17품목 지정
7	대통령령 제3246호 (1967. 10. 13)	○ 식품첨가물 지정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변경
8	부령 제209호 (1967. 12. 30)	○ 대통령령 제3246호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224품목 재지정
9	부령 제214호 (1968. 2. 27)	○ 113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7항목(확인시험법 23항목 포함) 일반시험법 신설
10	부령 제248호 (1969. 4. 15)	○ 63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4항목 일반시험법 신설
11	부령 제329호 (1969. 8. 1)	○ 부령 제175호, 제214호 및 제248호에 수재된 내용 종합적 개정 - 총칙, 제조기준 - 29항목 일반시험법 - 206품목 규격기준
12	부령 제337호 (1969. 10. 29)	○ 규격기준 중 첨가물 명칭 변경 및 사용기준 변경 2품목
13	부령 제347호 (1970. 4. 13)	○ 글루콘산 등 16품목 삭제, 5′-구아닐산나트륨 등 17품목 지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14	부령 제362호 (1970. 11. 23)	○ 비타민A_1, 비타민A_1지방산에스텔 2품목 삭제 ○ 글루코노델타락톤 등 27품목 지정
15	부령 제380호 (1971. 9. 10)	○ 식품첨가물 모든 지정품목에 대한 규격기준 완성 공포 - 총칙 34항목 - 제조기준 2항목 - 품목별 규격기준 : 화학적합성품 250품목, 천연첨가물 3품목, 혼합제제 2품목 - 일반시험법 29항목 등
16	부령 제387호 (1972. 1. 5)	○ 과산화질소 등 20품목 삭제, 규조토 등 16품목 지정
17	부령 제406호 (1973. 1. 12)	○ 과망간산칼륨, 살리씰산 2품목 삭제 ○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, 헥산 2품목 지정
18	부령 제422호 (1973. 9. 26)	○ 식용색소자색제1호, 식용색소자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, 프탈산디부틸, 부틸프타릴부칠글리코레이트 4품목 삭제 ○ 수산화나트륨액, 식용색소적색제40호 2품목 지정
19	부령 제429호 (1973. 11. 3)	○ 75품목 규격기준 개정(사용기준 제외) ○ 31품목 사용기준 개정 ○ 24품목 규격기준 삭제, 18품목 신설 ○ 2항목 일반시험법 개정, 1항목 신설
20	1973. 11	○ 식품첨가물공전(제1판) 발행
21	부령 제483호 (1975. 7. 8)	○ AF-2(2-(2-후릴)-3-(5-니트로-2-후릴)아크릴산아미드) 1품목 삭제, 글리실리친산2나트륨 등 6품목 지정 ○ 4품목 명칭 변경
22	부령 제500호 (1975. 11. 25)	○ 표백분 1품목 규격기준 개정 ○ 2-(2-후릴)-3-(5-니트로-2-후릴)아크릴산아미드 1품목 규격기준 삭제 ○ 6품목 규격기준 신설
23	부령 제507호 (1976. 1. 8)	○ 면류첨가알칼리제, 디-소르비톨액, 합성팽창제, 수산화나트륨액 4품목 삭제
24	고시 제8호 (1977. 2. 14)	○ 식품위생법 개정(법률 제2971호)에 의거 규격기준을 보건사회부고시로 변경공포 - 254품목 규격기준(변동 없음)
25	고시 제39호 (1977. 12. 31)	○ 천연카페인 1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13품목 규격기준 개정(총 규격기준 255품목)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26	부령 제600호 (1978. 6. 20)	○ 산탄검 1품목 지정
27	부령 제611호 고시 제44호 (1978. 10. 24)	○ 아스코빌팔미테이트, 염화칼륨 2품목 지정 ○ 산탄검, 아스코빌팔미테이트, 염화칼륨 3품목 규격기준 신설
28	고시 제44호 (1979. 7. 31)	○ 2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9품목 규격기준 개정
29	부령 제630호 (1979. 8. 20)	○ 산탄검 1품목 삭제(천연물로 함) ○ 에틸렌옥사이드, 폴리소르베이트20 2품목 지정
30	고시 제58호 (1979. 12. 27)	○ 비타민B_1염산염, 젤라틴 2품목 규격기준 개정
31	부령 제644호 고시 제12호 (1980. 4. 1)	○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1품목 지정 ○ BHA, 삭카린제제 2품목 규격기준 개정 ○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1품목 규격기준 신설
32	부령 제655호 고시 제27호 (1980. 8. 28)	○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, 이디티에이이나트륨 2품목 지정 ○ 과산화수소 1품목 규격기준 개정 ○ EDTA염류 2품목 규격기준 신설
33	부령 제3334호 (1980. 12. 31)	○ 식품첨가물의 지정제도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보건사회부고시로 변경
34	고시 제1981-21호 (1981. 3. 27)	○ 삭카린제제 1품목 규격기준 개정
35	고시 제1981-39호 고시 제1981-41호 (1981. 7. 2)	○ 고도표백분, L-시스테인염산염, 환원철, 전해철, 인산철 5품목 지정 ○ 5품목 규격기준 신설 - 고도표백분, 엘-시스테인염산염, 환원철, 전해철, 인산철
36	고시 제1981-52호 고시 제1981-53호 (1981. 10. 15)	○ 이산화티타늄, 퍼라이트 2품목 지정 ○ 이산화티타늄, 퍼라이트 2품목 규격기준 신설
37	고시 제1982-17호 (1982. 4. 17)	○ 삭카린제제 1품목 규격기준 개정
38	고시 제1982-31호 고시 제1982-32호 (1982. 6. 21)	○ 아크릴아미드아크릴산수지 1품목 지정 ○ 소르빈산, 안식향산 2품목 규격기준 개정 ○ 아크릴아미드아크릴산수지 1품목 규격기준 신설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39	고시 제1983-53호 고시 제1983-55호 (1983. 12. 31)	○ 규조토 등 6품목 지정 ○ 1품목 규격기준 개정 : 규조토→규조토(건조품) ○ 6품목 규격기준 신설 - 규조토(소성품), 규조토(융제조성품), 산화아연, 비오틴, 황산아연, 요오드칼륨
40	고시 제1984-16호 고시 제1984-17호 (1984. 2. 28)	○ 데실알코올 등 60품목 지정 ○ 혼합제제 1품목 규격기준 개정 ○ 68품목 규격기준 신설 - 합성품 : 엘-시스틴 등 60품목 - 천연품 : 아라비아검 등 8품목
41	고시 제1984-59호 (1984. 9. 1)	○ 보존료제제, 스테비오사이드 2품목 규격기준 신설
42	고시 제1985-5호 고시 제1985-6호 (1985. 1. 18)	○ 아디핀산, 구연산칼륨 2품목 지정 ○ 아디핀산, 구연산칼륨 2품목 규격기준 신설
43	고시 제1985-14호 고시 제1985-15호 (1985. 3. 8)	○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1품목 지정 ○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1품목 규격기준 신설
44	고시 제1985-22호 고시 제1985-23호 (1985. 3. 21)	○ 아스파탐 1품목 지정 ○ 아스파탐 1품목 규격기준 신설
45	고시 제1985-45호 (1985. 6. 25)	○ 식품첨가물공전(제1개정) 공포 252품목
46	고시 제1985-59호 고시 제1985-60호 (1985. 7. 29)	○ 염소 1품목 지정 ○ 염소 1품목 규격기준 신설
47	고시 제1985-79호 고시 제1985-81호 (1985. 11. 26)	○ 비타민E초산에스테르 1품목 지정 ○ 비타민E초산에스테르 1품목 규격기준 신설
48	고시 제1986-8호 고시 제1986-9호 (1986. 2. 15)	○ 이산화염소,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2품목 지정 ○ 이산화염소,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2품목 규격기준 신설
49	고시 제1986-40호 (1986. 7. 28)	○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신설 ○ 카라멜 1품목 규격기준 개정 ○ 8품목 사용기준 개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- 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아황산나트륨(무수), 아황산나트륨(결정), 산성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, 메타중아황산칼륨, 무수아황산
50	고시 제1986-48호 (1986. 10. 17)	○ 이산화규소 1품목 지정 ○ 이산화규소 1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니코틴산 등 12품목 사용기준 신설 ○ 황산아연 등 27품목 사용기준 개정 ○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
51	고시 제1987-3호 (1987. 1. 30)	○ 화학적합성품의 지정고시제를 규격기준의 고시에 통합고시제로 변경 ○ 6품목 규격기준 신설 - 파프리카추출색소, 알긴산, 탄닌산, 결정셀룰로오스, D-키실로오스, β-아포-8′-카로티날 ○ 소르빈산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○ 카라멜 등 4품목 규격기준 정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1987. 5. 1.부터 시행한다. 단, 121.소르빈산, 122.소르빈산칼륨, 319.프로피온산나트륨, 323.프로피온산칼슘, 62.메타중아황산칼륨, 167.아황산나트륨(결정), 270.카라멜, 344.황산아연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.
52	고시 제1987-9호 (1987. 2. 26)	○ 초산전분, 아세틸아디핀산전분, 히드록시프로필인산전분 3품목 규격기준 신설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기 인정받은 자가품질규격 및 기준은 1987.4.30까지 인정한다.
53	고시 제1987-57호 (1987. 8. 28)	○ L-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1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카라기난 등 3품목 규격기준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54	고시 제1987-82호 (1987. 12. 9)	○ 스테아릴젖산나트륨 1품목 규격기준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55	고시 제1988-1호 (1988. 1. 11)	○ 올레오레진캡시컴 1품목 규격기준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1988. 6. 10부터 시행한다.
56	고시 제1988-41호 (1988. 6. 15)	○ 안식향산 등 18품목 사용기준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57	고시 제1988-53호 (1988. 8. 8)	○ 18품목 삭제 - 구연산(결정), 구연산(무수), 수산화나트륨, 수산화나트륨(결정), 아황산나트륨(결정), 아황산나트륨(무수), 제3인산나트륨(결정), 제3인산나트륨(무수), 제2인산나트륨(결정), 제2인산나트륨(무수), 제1인산나트륨(결정), 제1인산나트륨(무수), 초산나트륨(결정), 초산나트륨(무수), 탄산나트륨(결정), 탄산나트륨(무수), 피로인산나트륨(결정), 피로인산나트륨(무수) ○ 9품목 규격기준 신설 - 구연산, 수산화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제3인산나트륨, 제2인산나트륨, 제1인산나트륨, 초산나트륨, 탄산나트륨, 피로인산나트륨→ 결정, 무수품 18품목을 통합, 단일화하여 9품목이 감소됨 ○ D-토코페롤(혼합형), D-α-토코페롤, 카라야검, 쉘락 4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소르빈산칼륨, 제2인산칼륨, 표백분, d-주석산수소칼륨 4품목 규격기준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1989. 1. 1부터 시행한다.
58	고시 제1988-104호 (1988. 12. 31)	○ 초산전분, 아세틸아디핀산전분, 히드록시프로필인산전분 3품목 규격기준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1989. 1. 1부터 시행한다.
59	고시 제1989-37호 (1989. 7. 6)	○ 7품목 규격기준 신설 -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, 푸마르산제일철, 폴리소르베이트 60, 65, 80, 스테아린산마그네슘, 폴리덱스트로스 ○ 폴리소르베이트20 1품목 규격기준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1989. 8. 1부터 시행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60	고시 제1989-51호 (1989. 9. 16)	○ 수산화칼륨, 아조디카르본아미드 2품목 규격기준 신설 ○ 스테아릴젖산나트륨, 스테아릴젖산칼슘,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3품목 규격기준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61	고시 제1989-71호 (1989. 12. 26)	○ 삭카린나트륨 1품목 기준규격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1990. 7. 1부터 시행한다.
62	고시 제1990-25호 (1990. 3. 20)	○ 아스파탐 1품목 기준규격(사용기준)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63	고시 제1991-25호 (1991. 5. 13)	○ 식용적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, 에틸렌옥사이드, 피페로닐부톡시드, 아크릴아미드아크릴산수지 4품목 삭제 ○ 기준규격 통폐합으로 6품목 감소 - 규조토(건조품, 소성품, 융제소성품)→규조토 - 명반, 소명반→황산알루미륨칼륨 - 암모늄명반, 소암모늄명반→황산알루미늄암모늄 - 비타민A유,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→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- 황산제일철(건조, 결정)→황산제일철 ○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- 식용타르색소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4품목, 피틴산, 아스파탐, β-아포-8′-카로티날, 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 5품목 ○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○ 성분규격 개정 : 이온교환수지, 착향료 등 352품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64	고시 제91-62호 (1991. 9. 2)	○ 대두인지질→레시틴, 파프리카추출색소, 삭카린나트륨, 산탄검 4품목 기준규격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1991. 10. 1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은 1992. 3. 1부터 시행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65	고시 제91-69호 (1991. 10. 4)	○ 기준규격 개정(식품첨가물공전 제3개정) 부 칙 이 고시는 1992. 3. 1부터 시행한다.
66	고시 제1992-17호 (1992. 3. 5)	○ 기준규격 개정 -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(산가), 소르빈산 및 그 칼륨염(사용기준),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착색료(사용기준) ○ 옥테닐호박산전분 1품목 기준규격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67	고시 제1992-40호 (1992. 5. 7)	○ 기준규격 개정 -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등 착색료(사용기준),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(③추가)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68	고시 제1992-79호 (1992. 9. 23)	○ D-말티톨, 자일리톨 2품목 기준규격 신설 ○ 기준규격 개정 - 염화칼륨(순도시험), 일반사용기준(맥아효소→전분질분해효소)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69	고시 제1993-59호 (1993. 6. 25)	○ 헥산(굴절률) 1품목 기준규격 개정 ○ 카르민, 코치닐추출색소 2품목 기준규격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70	고시 제1994-5호 (1994. 3. 7)	○ 알파아밀라아제 등 33품목 기준규격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71	고시 제1995-5호 (1995. 2. 17)	○ 기준규격 개정 - 구연산칼슘 등 56품목(사용기준) - 보존료제제 등(순도시험) - 일반사용기준(①, ②, ③항) ○ 감색소 등 21품목 기준규격 신설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.품목별 규격기준 중 23.구연산칼슘부터 367.코치닐추출색소 까지의 개정된 사용기준은 1995.8.1부터 시행한다.
72	고시 제1995-28호 (1995. 4. 25)	○ 감초추출물 등 14품목 기준규격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73	고시 제1995-51호 (1995. 11. 20)	○ 국, 종국,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3품목 기준규격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74	고시 제1996-45호 (1996. 4. 25)	○ 브롬산칼륨 삭제 ○ 탄산수소암모늄 1품목 기준규격 개정 ○ 5품목 기준규격 신설 - 덱스트라나아제, 말토게닉아밀라아제, G4생성효소,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, 포스포리아제A_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75	고시 제1996-46호 (1996. 5. 22)	○ 기준규격 신설 - 화학적합성품 : 글루콘산철 등 11품목 - 천연첨가물 : 글루코만난 등 14품목 ○ 동클로로필린나트륨 등 10품목 기준규격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76	고시 제1996-78호 (1996. 12. 28)	○ 기준규격 신설 - 화학적합성품 : 개미산 등 42품목 - 천연첨가물 : 가티검 등 36품목 ○ 기준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: 5′-구아닐산이나트륨 등 15품목 - 천연첨가물 : 국 등 29품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77	고시 제1997-31호 (1997. 6. 2)	○ 아세틸아디핀산전분, 옥테닐호박산전분, 초산전분, 히드록시프로필인산전분 4품목 삭제(변성전분 기준규격으로 통합) ○ 변성전분, 담마검 2품목 기준규격 신설 ○ 기준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: 아스파탐 등 6품목 - 천연첨가물 :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78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8-59호 (1998. 5. 18)	○ 기준규격 개정 - 총칙 : 시험 16항 개정 - 제조기준 : 혼합제제 1항 개정 -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: 이유식류의 강화제성분 나열, 조제유류항 신설 - 화학적합성품 사용기준 : 구연산칼슘 등 85품목 - 천연첨가물 사용기준 : 유동파라핀 등 3품목 ○ 기준규격 신설 - 화학적합성품 3품목 : 5′-시티딜산이나트륨, 5′-우리딜산이나트륨, 이소프로필알콜 - 천연첨가물 3품목 : 키토사나아제, 스모크향, 포도종자추출물 부 칙 이 고시는 1998년 5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79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8-90호 (1998. 9. 25)	○ 기준규격 개정 - 제조기준 : 천연첨가물 추출용매 규정 신설(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시행) - 심황색소 등 3품목 정의, 순도시험(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시행) -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등 30품목 사용기준 ○ 기준규격 신설 - 화학적합성품 2품목 : 규산마그네슘, L-글루타민 - 천연첨가물 6품목 : 파피아색소 등 6품목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.제조기준중 천연첨가물의 추출용매규정과 제4.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. 천연첨가물 39. 심황색소, 80. 파프리카추출색소, 102. 향신료올레오레진류중 추출용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80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8-119호 (1998. 12. 19)	○ 기준규격 개정 - 포도과피추출색소 1품목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81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-22호 (1999. 4. 12)	○ 제조기준 중 천연첨가물 추출용매에 삼염화에틸렌(Trichloroethylene) 및 염화메틸렌(Methylene chloride)을 추가 ○ 기준규격 개정 - 레시틴의 성상 변경 - 베리류색소의 이산화황 시험방법 및 규격 개정 - 벤토나이트의 순도시험 - 안나토색소의 성분규격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및 시험방법을 추가 설정 - 심황색소의 정의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82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-32호 (1999. 6. 21)	○ 기준규격 개정 - 올레오레진캡시컴의 사용기준 개정 - 향신료올레오레진류의 사용기준 개정 - 오징어먹물색소의 사용기준 개정 - 자주색옥수수색소의 사용기준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83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-41호 (1999. 7. 26)	○ 기준규격 신설 -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의 신규지정 ○ 제조기준중 혼합제제 개정 ○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○ 기준규격 개정 - 게라니올 등 13개 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15개 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○ 천연착향료의 혼합제제 중 보존료제제, 타르색소제제의 정의 개정 ○ 일반시험법 중 착향료시험법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84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-53호 (1999. 11. 9)	○ 기준규격 개정 -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기준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85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-57호 (1999. 11. 25)	○ 기준규격 개정 - 비타민 B_2 인산에스테르나트륨 등 4품목의 성분규격 및 명칭 개선 - 소르빈산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○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○ 기준규격 신설 - 화학적합성품 : 글루콘산칼륨 등 3품목 - 천연첨가물 : 가재색소 등 5품목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86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-32호 (2000. 7. 15)	○ 기준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사용기준 : 동클로로필린나트륨 등 43품목 - 천연첨가물 사용기준 : 감색소 등 52품목 - 화학적합성품 규격 :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등 11품목 - 천연첨가물정의 : β-글루카나아제 등 5품목 - 천연첨가물 성분규격 : β-글루카나아제 등 5품목 - 일반시험법 중 색소시험법, 색소레이크시험법 개정 ○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○ 기준규격 신설 - 화학적합성품 : 아세설팜칼륨, 젖산칼륨 - 천연첨가물 : 적무색소, 효소처리스테비아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사용기준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고시에서 정한 사용기준 중 개정된 「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」(2000-18호, 2000.4.18)에 따라 식품유형이 개정된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.
87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 -57호 (2000. 11. 28)	○ 기준규격 개정 - 에스테르검 등 3품목 성분규격 개정 - 유카추출물 등 3품목 천연첨가물정의 개정 - 소르빈산, 금박 등 28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○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○ 기준규격 신설 - 화학적합성품 : 식용색소적색제102호, 수크랄로스, 아산화질소 - 천연첨가물 : 5′-아데닐산, 5′-시티딜산, 산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88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-39호 (2001. 7. 6)	○ 화학적 합성품 중 L-라이신 등 2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 중 에리스리톨, 케르세틴을 신규지정 ○ 화학적 합성품 중 식용색소 황색제5호 등 3품목 성분규격 개정 ○ 화학적 합성품 중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○ 천연첨가물 중 구아검등 정의 개정 ○ 천연첨가물 중 파프리카 추출색소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○ 천연첨가물 중 규조토등 5품목 사용기준 개정 ○ 혼합제제류 중 삭카린나트륨제제의 정의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개정당시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89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-52호 (2001. 8. 24)	○ 천연첨가물 중 α-아밀라아제(세균성)의 정의 및 정량법 (역가) 개정 ○ 활성탄 정의 및 사용기준 신설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개정당시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90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-73호 (2001. 11. 29)	○ 화학적합성품 중 L-테아닌 등 2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 중 라우린산 등 3품목 신규지정 ○ 기준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수산화나트륨 등 5품목 - 천연첨가물 중 레시틴 등 3품목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개정당시 이미 접수된 한시적 기준·규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91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-51호 (2002. 9. 9)	○ 제 2. 제조기준 중 혼합제제 1품목 개정 ○ 제 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○ 화학적합성품 중 스테아린산칼슘 1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 중 판크레아틴 등 3품목 신규지정 ○ 정의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리파아제 등 8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비타민E초산에스테르 등 7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결정셀룰로오스 등 7품목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케톤류 등 13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카라멜색소 1품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품목 삭제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개정당시 이미 접수된 한시적 기준·규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92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-68호 (2002. 12. 11)	○ 제 1. 총칙 개정 ○ 제 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○ 화학적합성품 중 규산칼슘 등 4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중 미리스트산 등 2품목 신규지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메타인산나트륨 등 17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리파아제 등 2품목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등 13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감초추출물 등 2품목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식품첨가물공전 제 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⑤항은 2003년 3월 1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개정당시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93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-29호 (2003. 6. 14)	○ 화학적합성품 중 에틸셀룰로오스 등 4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 중 카프릭산 등 3품목 신규지정 ○ 정의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프로테아제(세균성) 등 4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- 화학적합성품 중 DL-사과산나트륨 등 16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β-글루카나아제 등 7품목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소르빈산 등 20품목 개정 ○ 제 6. 시약·시액·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중 주석산철시액 신설 ○ 제 6. 시약·시액·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중 2. 시액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개정당시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94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-39호 (2003. 9. 8)	○ 제 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중 ⑦항 신설 ○ 제 4.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중 라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신설 - 유효성분 123종 및 보조성분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95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-56호 (2003. 12. 2)	○ 제 2. 제조기준 중 젤라틴 항 신설 ○ 화학적합성품 중 폴리글리톨시럽 1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 중 질소 등 2품목 신규지정 ○ 정의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리파아제 등 2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이소말트 등 6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리파아제 등 4품목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등 2품목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이전에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96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-49호 (2004. 7. 15)	○ 제 1. 총칙 개정 ○ 제 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○ 화학적합성품 중 염화망간 등 3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 중 나린진 1품목 신규지정 ○ 명칭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제삼인산칼슘 1품목 개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- 천연첨가물 중 산성백토 1품목 개정 ○ 정의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리파아제 등 2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구연산삼나트륨 1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로커스트콩검 등 7품목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22품목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이전에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97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-50호 (2004. 7. 16)	○ 지정 취소 - 천연첨가물 중 꼭두서니색소 1품목 삭제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98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-86호 (2004. 11. 23)	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[유효성분] 개정 - 염화세틸피리디니움 등 유효성분 4종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99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-89호 (2004. 12. 10)	○ 화학적합성품 중 라우릴황산나트륨 등 3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 중 효소처리헤스피리딘 등 2품목 신규지정 ○ 정의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천연착향료 1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계피산 등 18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레시틴 등 21품목 개정 - 혼합제제류 중 혼합제제 1품목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소르빈산 등 4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중 천연카페인 1품목 개정 ○ 제 5. 일반시험법 중 유지류 시험법 항 신설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100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-34호 (2005. 6. 30)	○ 명칭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비타민E초산에스테르 1품목 개정 ○ 화학적합성품 중 *d-a*-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2품목 신규지정 ○ 정의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리파아제 등 2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구연산철 등 5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리파아제 등 2품목 개정 ○ 제 5. 일반시험법 중 확인시험법 개정 ○ 제 6. 시약·시액·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중 1. 시약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101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-74호 (2005. 12. 9)	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[유효성분] 개정 - 염화알킬(C_{12}-C_{16}) 벤질디메틸암모늄 1종 지정 취소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 종전 고시에 의한 성분인 "염화알킬(C_{12}-C_{16})벤질디메틸암모늄"은 이 고시의 "염화알킬(C_{12}-C_{18})벤질디메틸암모늄"으로 본다.
102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-77호 (2005. 12. 14)	○ 제 1. 총칙 개정(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 ○ 제 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○ 화학적합성품 중 *d-a*-토코페릴호박산 등 4품목 신규지정 (합성착향료는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) ○ 천연첨가물 중 니신 1품목 신규지정 ○ 명칭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라우린산 1품목 개정 ○ 지정 취소 - 화학적합성품 중 케톤류 등 18품목 삭제(합성착향료로 통합하여 개별품목으로 개정,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 ○ 성분규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국 등 3품목 개정 - 혼합제제류 중 면류첨가알칼리제 1품목 개정 ○ 제 5. 일반시험법 중 확인시험법 개정 ○ 제 6. 시약·시액·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중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1. 시약 개정 ○ 제 6. 시약·시액·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중 2. 시액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.총칙 (3), 제4.품목별규격 및 기준 가.합성첨가물 중 10.케톤류, 34.락톤류, 69.방향족알데히드류, 70.방향족알콜류, 162.에스테르류, 163.에테르류, 194.이소티오시아네이트류, 200.인돌, 아민, 옥사졸, 치아졸, 퀴노린, 피라진, 피롤, 피리딘 및 그 유도체, 226.지방산류, 227.지방족알데히드류, 228.지방족알콜류, 229.지방족탄화수소류, 248.치오알콜류, 249.치오에테르류, 266.테르펜계탄화수소류, 280.페놀류, 281.페놀에테르류, 298.푸르푸랄 및 그 유도체 및 424.합성착향료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.
103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-31호 (2006. 7. 28)	○ 천연첨가물 중 탄나아제 1품목 신규지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첨가물 중 글루콘산칼슘 등 38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화학첨가물 중 황산칼슘 1품목 개정 ○ 정량법 개정 - 혼합제제류 중 L-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1품목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.
104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-65호 (2006. 12. 27)	○ 천연첨가물중 폴리감마글루탐산 등 4품목 신규지정 ○ 지정취소 -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 취소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첨가물 중 아세설팜칼륨 등 2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탈크 등 4품목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105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-15호 (2007. 3. 20)	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첨가물 중 초산에틸 등 2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헥산 1품목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. (다른 고시의 개정)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-25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.3.16) 중 "추출 또는 분리 등의 제조과정 중에 사용되는 용제로는 관련 법령 및 관련 공정서의 규격에 적합한 물, 주정, 에테르, 아세톤, 이소프로필알콜, 헥산,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다."를 "추출 또는 분리 등의 제조과정 중에 사용하는 요제로는 관련 법령 및 관련 공정서의 규격에 적합한 물, 주정, 에테르, 아세톤, 이소프로필알콜(잔류량은 기능성 원료에서 0.05g/kg 이하이어야 한다), 헥산(잔류량은 기능성 원료에서 0.005g/kg 이하이어야 한다), 초산에틸(잔류량은 기능성 원료에서 0.05g/kg 이하이어야 한다),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다"로 개정한다.
106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-74호 (2007. 11. 9)	○ 제 1. 총칙 (4)항 신설 ○ 제 2. 제조기준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 신설 ○ 화학적합성품중 오존수 및 차아염소산수 신규지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중 식용색소적색제2호 등 3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중 락색소 등 16품목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천연첨가물중 홍국적색소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.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. 화학적합성품 중 123.식용색소적색제2호, 124.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, 천연첨가물 중 13.락색소, 25.베리류색소, 30.비트레드, 50.적양배추색소, 67.코치닐추출색소, 80.파프리카추출색소, 94.홍국적색소, 96.홍화황색소, 116.자주색옥수수색소, 131.백단향색소, 143.자주색참마색소, 144.차즈기색소, 151.포도과즙색소, 168.가재색소 및 173.적무색소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107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-86호 (2007. 12. 24)	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[유효성분] 개정 - 과망간산칼륨 등 12종 지정 취소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108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-34호 (2008. 6. 24)	○ 천연첨가물 중 수소 신규지정 ○ 지정취소 - 화학적합성품 중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1품목 취소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L-시스테인염산염 개정 및 합성착향료 607개 성분 추가 ○ 성분규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우유응고효소 등 4품목 개정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(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고시품목 제외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109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-62호 (2008. 8. 27)	○ 식품첨가물공전 체계 변경 ○ 제 2. 제조기준 중 천연첨가물 원료 규정 신설 ○ 천연첨가물 중 히알루론산 신규지정 ○ 정의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레시틴 개정 ○ 성분규격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DL-사과산 등 4품목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및 스테아릴젖산칼슘, 천연첨가물 중 카라멜색소 및 로진 등 4품목 개정 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「제조기준」, 「일반사용기준」, 「품목별 규격 및 기준」 신설 - 유효성분 114종을 제조기준으로 이동 - 에탄올 등 7품목 신규지정 ○ 일반시험법에 살균소독력 시험법 추가 ○ 시약·시액·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에 글루코루노락톤 등 4품목 추가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Ⅱ.제3.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.천연첨가물 중 61.카라멜색소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 (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된 식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필한 품목은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Ⅲ.제1.제조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.
110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1호 (2009. 1. 2)	○ Ⅰ. 총칙 개정 ○ 총칙 중 [용어의 풀이] 신설 ○ 천연첨가물의 추출용매 중 “메틸알콜” 및 “아세톤” 삭제 ○ 화학적합성품 중 몰리브덴산암모늄 등 5품목 신규지정 ○ 천연첨가물 중 나타마이신 신규지정 ○ 지정 취소 - 화학적합성품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,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3품목 ○ 사용기준 개정 - 화학적합성품 중 과산화벤조일(희석) 등 84품목 개정 - 천연첨가물 중 감색소 등 57품목 개정 ○ 화학적합성품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·가공·소분·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.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. (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품목제조신고 및 수입신고를 할 경우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고시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를 수 있다.
111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51호 (2009. 7. 10)	○ 신규지정 - 화학적합성품 중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1품목 - 천연첨가물 중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및 아스파라기나아제 2품목 ○ 지정취소 - 천연첨가물 중 콘색소, 누리장나무색소, 땅콩색소 3품목 ○ 성분규격 개정 - 탈크를 탤크로 명칭 변경, 탤크의 순도시험 중 석면 및 건조감량 규격 신설 -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순도시험 중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규격 신설 및 납 규격 강화 - 스테비오사이드를 스테비올배당체로 명칭 변경,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등 규격 신설 및 비소, 납 규격 강화 - 카라기난의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, 세균수, 대장균, 살모넬라 규격 신설 - 펙티나아제의 정의 개정 및 순도시험 중 납, 대장균 규격 강화 - 풀루라나아제의 정의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소르빈산칼슘, 이.디.티.에이.이나트륨, 안식향산, 이.디.티.에이.칼슘이나트륨, 스테비올배당체,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용기준 개정 - 철클로로필린나트륨, 수소의 사용기준 신설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Ⅱ.제3.나.82.펙티나아제 관련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. 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Ⅱ.제3.가.75.탈크 관련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112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59호 (2009. 7. 24)	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과산화수소, 과산화초산 2품목 신규지정 ○ 일반시험법 살균소독력 시험법 중 포자현탁액시험법 신설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필한 품목은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
113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168호 (2009. 11. 19)	○ 지정 취소 - 화학적합성품 중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1품목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·가공·소분·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.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.
114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-33호 (2010. 5. 18)	○ 신규지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아미드펙틴 1품목 ○ 성분규격 개정 - 중금속 규격 삭제 및 과산화벤조일 등 257개 품목의 납, 카드뮴, 수은 등 규격강화 또는 신설 - 구연산칼슘 등 41개 품목의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,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- 알긴산나트륨 등 24개 품목의 세균수, 대장균, 살모넬라, 진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 - 구연산산나트륨 등 10개 품목의 정의 등 개정 ○ 제조기준 개정 -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신설 ○ 사용기준 개정 - 스모크향 1품목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○ 명칭 개정 - L-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 MSG 삭제 ○ 일반시험법 개정 -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및 수은시험법 추가신설 - 색소시험법 등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재검토기한)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7일까지로 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· 가공 · 소분 ·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115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-57호 (2010. 7. 12)	○ 신규지정 - 천연첨가물 「α-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」1품목 신설 ○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글루콘산철 -「일반사용기준」에서 이미 영 · 유아식 등에 「스테비올배당체」 및 「효소처리스테비아」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들 두 품목의 개별품목 항에 중복 기재하고 있어 이를 삭제 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- 구연산 1품목 신설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재검토기한)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. (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제조 · 가공 · 판매 또는 수입(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경우를 포함)된 「구연산」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을 적용한다. 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」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필한 「α-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」 및 「구연산」은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
116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-62호 (2010. 8. 18)	○ 사용기준 개정 - 「식용색소적색제102호」1품목을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- 「식용색소녹색제3호」등 식용타르색소 15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의 식품유형을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분류체계에 맞도록 수정함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재검토기한)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 · 가공 · 소분 ·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11년 8월 17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.
117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-68호 (2010. 9. 29)	○ 식품첨가물의 「일반사용기준」 재정비 - 식품첨가물의 「일반사용기준」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 - 조제유류, 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을 영 · 유아용 곡류조제식, 기타 영 · 유아식에도 사용토록 사용범위 확대 등 재정비 ○ 사용기준 개정 - 「아셀렌산나트륨」 등 영양강화제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확대 - 「스테비올배당체」 및 「효소처리스테비아」 2품목에 대해 식빵, 캔디류, 유가공품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확대 - 「식용색소적색제40호」 등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명란젓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확대 - 「글루콘산동」 등 영양강화제 11품목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재정비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재검토기한)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.
118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-82호 (2010. 11. 12)	○ 지정 취소 - 「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, 비타민B_1나프탈린-2,6-디설폰산염, 비타민B_1프탈린염, 표백분, 탈지미강추출물, 데히드로초산」 6품목 삭제 ○ 일부 품목의 성분규격 통합(현행 12품목 → 5품목) -「리파아제/에스테라아제」를 「리파아제」에 통합 -「렌넷카제인」을 「카제인」에 통합 -「올레오레진캡시컴」을 「향신료올레오레진류」에 통합 -「α-아밀라아제(비세균성), α-아밀라아제(세균성)」 2품목을 「α-아밀라아제」로 통합 -「프로테아제(곰팡이성:SAP), 프로테아제(곰팡이성:HUT), 프로테아제(세균성), 프로테아제(식물성)」 4품목을 「프로테아제」로 통합 ○ 성분규격 개정 - 효소제인「리파아제」등 6품목에 대한 납, 대장균 및 이소프로필알콜 규격 신설·강화 ○ 정의 개정 - 껌기초제인「폴리이소부틸렌」의 현행 정의에 원료성분인 이소부틸렌 이외에「이소프렌」도 포함되도록 정의 개정 ○ 사용기준 개정 - 「소르빈산」등 합성보존료 9품목의 사용량 합계가 누락된 일부 품목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 - 「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」등 산화방지제 3품목, 「무수아황산」등 표백제 6품목 등 19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Ⅱ. 제3 가 46, 56, 66, 73, 95, 96, 104, 105, 148, 152, 153, 154, 159, 160, 230, 231, 233, 265, 274, 294, 333, 388, 389, 392, 393, 396, 405, 나. 20, 41, 63, 87, 102, 107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1월 11일까지로 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「식품위생법」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에 따라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119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-13호 (2011. 3. 22)	○ 「총칙」 및 「제조기준」 중 일부 조항 제·개정 - 「총칙」에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 - 식품첨가물의「제조기준」중 식품첨가물 일반에 대한 규정 추가 신설 ○ 「5′-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」 등 30품목의 정의 제·개정 - 「5′-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」등 27품목의 정의에 기원 및 주성분 명확화 등 정비 - 「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」 등 3품목에 대한 정의 추가 신설 ○ 「감색소」등 168품목의 성분규격 제·개정 - 「감색소」등 142품목에 대해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납, 카드뮴, 수은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- 「파프리카추출색소」 등 30품목의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, 염화물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- 「β-글루카나아제」등 34품목의 대장균, 세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 ○ 「몰식자산프로필」 등 37품목의 사용기준 제·개정 - 「몰식자산프로필」 등 5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'식용유지류(향미유제외)'를 '식용유지류'로 재정비 - 「안식향산」 등 4품목을 '식초절임'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개정 - 「메틸셀룰로오스」및「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」2품목에 누락된 사용량 기준 추가 - 「이산화규소」등 5품목의 병용사용 규정 추가 및「글루콘산칼슘」등 21품목의 사용기준 중 용어 수정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., II. 제1., II. 제3. 중 가. 51, 161, 206, 나. 2, 3, 4, 7, 15, 25, 28, 31, 64, 71, 94, 95, 96, 97, 98, 128, 137, 148, 150, 153, 155, 158, 161, 162의 정의, II. 제3. 가. 64, 104, 105, 145, 153, 154, 367, 368, 388, 405, 417, 428의 사용기준 각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「식품위생법」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한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20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-71호 (2011. 11. 30)	○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- 화학적합성품 중 셀렌산나트륨 등 2품목 신규지정 - 천연첨가물 중 자일라나아제 등 4품목 신규지정 ○ 식품첨가물 조문체개 개선·정비 -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분리 - 품목별 성분규격 및 일반시험법 중의 용량단위 및 온도단위 정비 - 일반시험법 중 시약 및 시액 명칭 등 용어 재정비 ○「감색소」 등 175품목의 성상 등 규격 재정비 - 「감색소」 등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 및 주성분 명확화 등 168품목의 정의 및 성상 등 규격 재정비 - 「L-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」등 혼합제제류 7품목의 납 규격 강화 ○ 「소르빈산」 등 168품목의 식품유형 정비 등 사용기준 재정비 - 일반 사용기준에서 영·유아식에 누락된 영·유아식용 특수조제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- 「소르빈산류」3품목에 콜라겐케이싱의 사용확대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- 「프로피온산」등 165품목의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신규지정 - 「요오드」1품목 신규지정 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조문체계 개선·정비 -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을 품목별 성분규격 및 보존기준과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분류 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4품목 성분규격 개정 - 과산화수소 등 4품목에 대한 중금속 분석법을 개별규격인 납으로 규격 신설하고, 중금속 규격 삭제 부 칙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I. 제 3. 가. 104(소르빈산), 105(소르빈산칼륨), 405(소르빈산칼슘)의 사용기준 각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II. 제 3. 가. 434(셀렌산나트륨), 435(몰리브덴산나트륨)의 신설규정은 고시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되어 이 고시 및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「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필한 "자일라나아제", "5′-디아미나아제", "α-글루코시다아제", "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" 및 "요오드"는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(재검토기한)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121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-10호 (2012. 3. 27)	○ 지정취소 - 국내에서만 지정되어 있거나 국내 제조·수입 실적이 없는 "뮤타스테인, L-소르보오스, 가재색소, 크릴색소" 4품목 삭제 ○ 신규지정 - 건강기능식품의 정제 또는 이의 제피,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"폴리비닐알콜" 기준 및 규격 신설 ○ 성분규격 제·개정 - "계피산" 등 70품목의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납 규격 신설 - "5′-아데닐산, 5′-시티딜산" 2품목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 - "카페인" 등 14품목의 일부 시험법 정비 등 자구수정 - "카라멜색소" 중 카라멜색소 III의 제조공정에서 생성될 우려가 있는 "2-아세틸-4-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"에 대한 규격 신설 ○ 사용기준 제·개정 - "삭카린나트륨"의 소스류 등 8개 대상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- "아황산염류" 6품목의 건조채소류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- "안식향산류" 6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○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"이산화염소제제" 1품목 신규 지정 ○ 제외국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2종 삭제 및 1종의 성분명 변경 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명과 규격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명(제제명)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"에탄올" 등 10품목의 품목명 개정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I. 제3. 나. 61(카라멜색소)의 정의, 확인시험, 순도시험 중 (1)~(10)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, II. 제3. 가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436(폴리비닐알콜), III. 제3. 12(이산화염소제제) 각각 신설규정, II. 제4. 가. 메타중아황산나트륨, 메타중아황산칼륨, 무수아황산, 삭카린나트륨, 산성아황산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차아황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각각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되어 이 고시 및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제4조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필한 "이산화염소제제"는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제5조(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22	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-34호 (2012. 6. 1)	○ 성분규격 제·개정 - "자당지방산에스테르" 등 12품목의 일부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 - "효모" 중 건조효모의 정의에 비활성 건조효모 추가 및 이에 따른 미생물 규격 적용대상 명확화 ○ 사용기준 제·개정 - "소르빈산류" 3품목의 조미된장, 조미고추장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및 향신료조제품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- "이초산나트륨" 1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되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123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15호 (2013. 4. 5)	○ 정부조직법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 공포·시행) 개정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124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184호 (2013.5.24)	○ 신규지정 - 한시적 기준·규격 인정품목인 "우레아제"의 규격 및 기준 신설 ○ 성분규격 제·개정 - 리파아제 등 2품목의 정의에 기원미생물 추가 - 폴리덱스트로스 등 37품목의 일부 시험법 및 용어 재정비 ○ 사용기준 제·개정 - "식용색소녹색제3호" 등 19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- "메타중아황산나트륨" 등 7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 명확화 등 재정비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I. 제3. 가. 286(폴리덱스트로스), 나. 20(리파아제), 및 145(카로틴)의 개정규정, 나. 212(우레아제)의 신설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되어 이 고시 또는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득한 "우레아제"는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제5조(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25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245호 (2013.12.16)	○ 신규지정 - "불화나트륨, 요오드산칼륨, 부탄" 3품목의 규격 및 기준 신설 ○ 총칙 중 조항 신설 및 일반사용기준 개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○ 성분규격 제·개정 - “니코틴산” 등 2품목의 이명 신설 및 “차아염소산수” 등 4품목의 정의 등 개정 - “*dl*-*a*-토코페릴아세테이트” 등 12품목의 일부 시험법 개선 ○ 사용기준 제·개정 - “메타중아황산나트륨”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소스류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 및 타 고시명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- 일반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“아셀렌산나트륨, 셀렌산나트륨”의 사용대상 식품에 조제유류 추가 및 “나타마이신”의 사용량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용기준 개정 ○ 일반시험법 및 시약·시액 제·개정 - 일반시험법 중 염화물의 시험법 개선 및 시약·시액 신설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I. 제2. 나. 1., 제4. 가. 셀렌산나트륨, 아셀렌산나트륨의 개정규정은 「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2. 1. 더. (4) 성분규격 중 셀레늄 기준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며, II. 제3. 437. 불화나트륨, 제4. 가. 불화나트륨의 개정규정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. 19. 19-5. 5) 환자용 균형영양식 중 불소 규격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되어 이 고시 및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득한 “젖산제제”는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제5조(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 제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.
126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28호 (2014.2.13)	○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 개정 제19조(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의 개정)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245호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6조(규제의 재검토)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27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76호 (2014.10.28)	○ 신규지정 - 암모늄포스파타이드, 폴리에틸렌글리콜, 카제인칼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○ 총칙 및 제조기준 개정 -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대상에 포함되는 식품첨가물의 시험법 규정 신설 - 제조기준 중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 ○ 식용색소청색제1호 등 4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성상 개선 등 4품목의 규격 개정 - 효소제 40품목의 함량 규격 삭제 및 정의 등 개정 ○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향신료조제품, 건조살구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 -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및 수크랄로스, 아세설팜칼륨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- 황산아연의 사용대상 식품에 맥주 추가 및 이산화염소(수)의 사용기준 정비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“식품첨가물등”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 및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정에 따른다. 제4조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득한 "리소포스포리파아제"는 이 고시에 따라 "포스포리파아제(포스포리파아제 B)"로서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제5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27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5호 (2015.2.24)	○ 합성착향료 수재 물질 중 1종 지정취소 - "3-acetyl-2,5-dimethylthiophene"의 지정취소 ○ 푸마르산제일철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푸마르산제일철 등의 수은시험법 정비 및 종국 등의 정의 명확화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선 ○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8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건조코코넛에 대한 사용량 개정 - 아스파탐의 사용대상 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서 삭제 및 정비 - 수소의 사용대상 식품에 음료류 추가 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개정 - 제조기준 중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반원칙 신설 -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중 유사 성분의 통합 및 일부 성분 삭제 등에 따른 제조성분 8종 정비와 질산 1종 추가 **부칙<제2015-5호, 2015.2.24.>**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I. 제 3. 가. 386(규산마그네슘), 424. 합성착향료(A018 3-acetyl-2,5- dimethylthiophene), 제 4. 나. 수소, III. 제 1. 가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및 나.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. 제3. 가. 424. A018 "3-acetyl-2,5-dimethylthiophene"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. 제3. 가. 424. A018 "3-acetyl-2,5-dimethylthiophene"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("3-acetyl-2,5-dimethylthiophene"은 제외)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28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85호 (2015.11.19.)	○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정량기준 설정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 -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 설정 ○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글루코오스산화효소의 정의에 *Penicillium chrysogenum* 추가 - 셀룰라아제의 정의에 *Penicillium funiculosum* 추가 - 풀루라나아제의 정의에 *Bacillus licheniformis* 추가 - D-자일로오스의 정의에 효소분해법이 포함되도록 정의 개정 - 타마린드검의 정의에 희석제 첨가 단서 추가 - 산화칼슘의 알칼리 또는 마그네슘 규격 개정(1.5%→3.6% 이하) ○ 환원철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·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 개정 -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**부칙<제2015-85호, 2015.11.19.>**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. 다만, II. 제 2. 나. 1, 제 3. 가. 356, 나. 10, 34, 69, 72, 86 및 제 4. 나. 금박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29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32호 (2016.4.29.)	○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- 화학적 합성품, 천연첨가물 구분 없이 식품첨가물로 개편하여 품목명을 중심으로 가·나·다순으로 조문 정비 ○ 총칙 및 공통기준 정비 - 총칙을 목적, 용어의 정의, 일반원칙으로 분류·개편 - 제조기준 및 일반사용기준의 원칙 보완·신설 - 보존 및 유통기준 신설 ○ L-글루탐산나트륨 등 46품목의 품목명 개정 ○ 네오탐 및 구연산제일철나트륨의 신규 지정 ○ 품목별 성분규격에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110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○ 비소시험법 개선 및 471품목의 비소 규격 정비 ○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 및 소브산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○ 식품첨가물의 지정취소 품목 목록 등 별표1~3 신설 ○ 이산화염소제제의 정의 개정 등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정비 **부칙<제2016-32호, 2016.4.29.>**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1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: 고시한 날 가. II.4.가. 중 구연산제일철나트륨, 네오탐, 풀루라나아제, β-글루카나아제, 결정셀룰로오스에 대한 개정규정 나. II.5.가. 중 구연산제일철나트륨, 네오탐, 소브산·소브산칼륨·소브산칼슘, 아세설팜칼륨, 카페인에 대한 개정규정에서 소브산·소브산칼륨·소브산칼슘의 품목명 개정을 제외한 것 다. II.5.다.(1) 중 요오드산칼륨에 대한 개정규정 라. IV.8. 비소시험법의 개정규정 2.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에 대한 개정규정: 2016년 11월 20일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다만, "L-글루탐산나트륨" 등 46품목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첨가물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0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124호 (2016.11.16.)	○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○ 담마검 등 21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국, 이산화규소의 정의 개정 및 이산화탄소의 성상 개정 - 담마검 등 17품목의 규격 시험법 또는 정량법 정비 - β-글루카나아제의 기원미생물로서 "*Talaromyces emersonii*"가 포함되도록 정의 개정 ○ 사카린나트륨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○ 재검토기한을 본조에 재설정 ○ 전부개정고시의 부칙 개정 - 부칙 중 품목명 개정규정의 적용례 개정 **부칙<제2016-124호, 2016.11.16.>**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1. II. 4. 가. 스테비올배당체,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개정규정: 2017년 3월 1일 2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: 2018년 1월 1일 가. II. 5. 가. 수산화칼슘, L-젖산마그네슘, 젖산칼륨, 탄산칼륨(무수), 폴리비닐피로리돈의 주용도에 대한 개정규정 나. II. 5. 다.의 개정규정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수입신고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1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-35호 (2017.5.8.)	○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,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, 흑당근추출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○ 총칙 중 용어 정비 및 "프로테아제"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식품공전 용어와 일치되도록 과실류를 과일류로 개정 및 pH 범위에 중성 추가 - 프로테아제의 제조균주로 *Aspergillus melleus* 추가 - 퍼셀레란의 제조방법 명확화에 따른 정의 개정 ○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 중 기타 식품을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으로 세분화 - 소브산류 3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에 소스류, 과채주스, 탄산음료 추가 및 안식향산류, 파라옥시안식향산류 6품목의 병용 사용기준 등 정비 - 5′-우리딜산이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환자용 식품 추가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서 개정 - 유동파라핀 등 3품목의 자구수정에 따른 사용기준 정비 -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목록에 산도조절제 용도의 수산화칼륨 추가 ○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 개정 - 비소시험법 중 비색법에 품목별 시험용액 조제법 추가 **부칙<제2017-35호, 2017.5.8.>**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. 5. 가. 메타중아황산나트륨, 메타중아황산칼륨, 무수아황산, 산성아황산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의 사용기준 중 17(종전의 16)의 개정규정 및 IV. 8. 비소시험법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수입신고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전의 고시 및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득한 "브랜치자임(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)"는 이 고시에 따라 "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"로서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제5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2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-100호 (2017.12.11.)	○ 산성피로인산칼슘, 청관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식품의 산도조절제, 팽창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"산성피로인산칼슘"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 생산용 보일러의 청관 목적으로 구연산삼나트륨 등 40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관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○ 총칙 개정 - 용어의 정의에 "청관제"의 용도 정의 신설 및 어패냉동품의 정의 중 고래고기제품 삭제 ○ 분말비타민A 등 1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분말비타민A 등 16품목의 시험법 정비 - 펙티나아제의 제조균주로서 "*Aspergillus aculeatus*"가 포함되도록 정의 개정 - 합성향료의 정의에 희석제 첨가 규정 추가 및 "isopropyl sorbate"의 이명 정비 ○ "감색소" 등 137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"감색소" 등 134품목의 사용기준 정비 -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떡류, 복합조미식품 등 추가 및 식품유형 정비 - 황산아연"의 사용대상 식품에 기타주류 추가 - 액체질소가 최종식품에 액체로서 잔류하지 않도록 "질소"의 사용기준 강화 - 절임식품에 대한 식용타르색소류의 단서조항 정비 및 곡류가공품 등에 대한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부칙<제2017-100호, 2017. 12. 11.>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 1. 영업자가 ?식품의 기준 및 규격?(식약처 고시 제2016-154호('16.12.29), 식약처 고시 제2017-57호('17.6.30))으로 개정된 사항을 그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전에 미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과 관련된 이 고시의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. 2. I. 2. 2. 1) (23), II. 4. 가. 및 II. 5. 가. 청관제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3. II. 5. 가. 메타중아황산나트륨, 메타중아황산칼륨, 무수아황산, 산성아황산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의 사용기준 중 1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3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53호 (2018.6.29.)	○ 니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니켈을 가공유지의 경화공정 중 촉매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○ 총칙 일부 조항 삭제 및 합성향료의 허용물질 목록 개정 - 총칙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향료 물질의 인정 조항 삭제 - "합성향료" 허용물질 60종 정비 및 28종 추가 지정 ○ 조제유류 등 영·유아식 규정 개정 및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1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조제유류 등 영·유아식 범위에 "유단백 알레르기 영·유아용 조제식품" 추가 및 이에 따른 "글루콘산망간" 등 7품목의 사용기준 정비 - "황산알루미늄암모늄" 등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5품목의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설정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 - "L-시스테인염산염"을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및 이에 따라 합성향료 목록에 등재 ○ 일반시험법 중 질소정량법 개정 - 일반시험법 중 질소정량법에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한 시험방법 신설 부칙<제2018-53호, 2018. 6. 29.>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. 3. 3)의 개정규정 및 II. 5. 가.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,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,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, 황산알루미늄암모늄, 황산알루미늄칼륨의 각 개정규정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4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71호 (2018.9.28.)	○ 한시적 기준·규격으로 인정된 "β-아밀라아제"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한시적 기준·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"β-아밀라아제"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한시적 기준·규격으로 인정된 착색료 용도의 "진주빛색소"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한시적 기준·규격으로 인정된 유화제, 증점제, 안정제 용도의 "카제인칼륨"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○ "락타아제"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"락타아제"의 제조균주에 "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" 추가 - "밀납"의 실제 제품 색깔을 반영한 성상 수정 - "D-소비톨"의 분자식 오기 수정 - "카로틴" 확인을 위한 INS No. 추가 - "L-히스티딘" 정량법 중 지시약의 색변화 명확화 및 "히알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루론산"의 순도시험 중 대장균 시험방법에서 불필요한 설명 삭제 ○ 일반시험법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시험법 개정 - "향료시험법"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계산식 내 '공시험', '본시험' 용어 변경 - "과산화수소제제"의 잔류량시험에 사용되는 지시약 수정 **부칙<제2018-71호, 2018. 9. 28.>**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5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84호 (2018.11.1.)	○ "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" 신설 -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-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별표에 신설 ○ "과산화초산"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식품의 살균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"과산화초산"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○ "국"의 성분규격 개정 - "국"의 성분규격 중 산도 기준 삭제 ○ 영·유아식에 사용되는 "구아검" 등 1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"구아검" 등 14품목의 최대사용량 기준 설정 **부칙<제2018-84호, 2018. 11. 1.>**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. 5. 가. L-아스코빌팔미테이트의 사용기준 및 II. 5. 다. (2)의 조제유류 등에 대한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6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1호 (2019.1.9.)	○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-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신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 - 향료의 신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 ○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-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마련 ○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- 제조기준 중 면류첨가알카리제에 대한 규정 삭제 ○ "α-아밀라아제" 등 2품목의 정의 개정 - "α-아밀라아제"의 제조균주에 "*Rhizomucor pusillus*의 α-아밀라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*Aspergillus niger*" 추가 - "β-카로틴"의 정의 및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기준 신설 ○ "규산마그네슘" 등 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- "규산마그네슘"의 성분규격 중 건조감량 기준 개정 - "L-글루탐산나트륨" 등 3품목의 CAS 번호 개정 - "카페인"의 이명 및 CAS No에 카페인1수염에 대한 내용 추가 - "합성향료" 물질 2종에 대한 일반명 오기 수정 - "합성팽창제"의 1제식 및 2제식을 설명하는 문구 추가 - "혼합제제" 순도시험 중 용어를 정의와 일치 ○ "메타중아황산나트륨"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"메타중아황산나트륨"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을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- "수산화나트륨액"의 사용기준을 수산화나트륨과 일치하도록 개정 - "L-아스코빌팔미테이트" 및 "프로필렌글리콜"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고 실제 사용현황 및 사용량을 반영한 개정 ○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- Capsaicin 등 20개 합성향료 물질을 [별표 2]에 추가 **부칙<제2019-1호, 2019. 1. 9.>**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. 5. 가. L-아스코르빌팔미테이트 및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7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63호 (2019.7.25.)	○ "자당지방산에스테르"의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- "자당지방산에스테르"의 정의에서 기 허용된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에 대한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○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-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,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정의 개정 ○ 합성향료 물질 추가 - 합성향료 물질 114종 추가 지정 ○ "금박" 등 1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- "금박"을 표면장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 - 마요네즈에 "소브산 및 소브산염"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준 설정 - "메타중아황산나트륨"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부칙<제2019-63호, 2019. 7. 25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

<table>
<tr><th>순 위</th><th>부령 또는 고시번호
공포(고시) 일</th><th>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제5조(다른 고시의 개정)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5 12. 12-2 5) (5) 보존료의 소브산, 소브산칼륨, 소브산칼슘의 규격에 다음을 신설한다.
<table>
<tr><td>소브산
소브산칼륨
소브산칼슘</td><td>1.0 이하(소브산으로서, 마요네즈에 한한다. 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.5g/kg 이하이어야 하며,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.0g/kg 이하)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138</td><td>식품의약품안전처
고시 제2019-71호
(2019.8.26.)</td><td>○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
-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
○ “글루탐산”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
- “L-글루탐산”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중 피롤리돈카복실산의 시험법 개선
- “수용성안나토” 등 3품목의 확인시험, 순도시험,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
○ “천연향료” 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
- 천연향료 기원물질 59종에 대한 명칭, 학명 수정
○ 수산화칼륨 등 13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
- 영·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·유아식이 영·유아용 이유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글루콘산동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
- 영·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중 수산화칼륨의 사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시키고, 헴철을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으로 이동
○ 살균소독력 시험법 개선
- 일반시험법 중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선
○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
-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,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제출 규정 신설</td></tr>
</table>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부칙<제2019-71호, 2019. 8. 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I. 5. 가. 및 다.의 영·유아용 이유식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3조(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(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) 판매할 수 있으며,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.
139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88호 (2019.10.11.)	○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규정 명확화 -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 ○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 명확화 -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시,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 - 식용근거,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○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- 보존 및 유통기준 중 “서늘한 곳” 용어 개선 - “카페인”의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개선 부칙<제2019-88호, 2019. 10. 1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“식품첨가물등”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140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134호 (2019.12.19.)	○ “아산화질소”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-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 신설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○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- 제조용제 및 산도조절제 용도로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○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- "메타인산나트륨"의 순도시험 중 불소화물 시험법 개선 - "스모크향"의 순도시험 중 페놀 시험법 개선 - "시클로덱스트린" 등 7품목의 정량법 시험법 개선 - "아황산나트륨" 및 "산성아황산나트륨"의 순도시험 중 셀레늄 시험법 개선 - "탄닌산"의 확인시험 시험법 개선 부칙<제2019-134호, 2019. 12. 1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I. 1. 5)의 아산화질소 제조기준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. 1. 5)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한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. 1. 5)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140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8호 (2020.3.20.)	○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- 커피의 표면 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부칙<제2020-18호, 2020. 3. 2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다른 고시의 개정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제5 9. 9-2 5) 규격 중 "(3) 타르색소 :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."를 "(3) 허용외 타르색소 :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"로 한다. 제5. 9. 9-2 6) 시험방법 중 "(3) 타르색소"를 "(3) 허용외 타르색소"로 한다.
141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59호 (2020.7.10.)	○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- 일반원칙 중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 ○ 밀납 등 3품목의 성분규격 개선 - "밀납"의 CAS 번호에 황납의 CAS 번호 추가 - "D-소비톨액"의 함량을 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 - "사카린나트륨제제"의 정의 중 염화나트륨 명칭을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식품유형과 일치 ○ 구아검 등 4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5종 개선 - "구아검" 등 2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에 다양한 질소정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- "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" 등 3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중 벤젠 등 고독성 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험법 개선 - "담마검"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내용을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과 일치 - "글루코만난" 등 14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소시험법 등 2종의 일반시험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추가 및 오기 수정 - "파프리카추출색소"의 잔류용매 시험법 및 수은시험법 등 일반시험법 3종 에 사용되는 시험장비 및 분석시약 개선 ○ 글루콘산망간 등 24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식품유형 변경사항을 반영한 "글루콘산망간"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천일염 규격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"페로시안화나트륨" 등 3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- 마요네즈 중 소브산 허용에 따른 "안식향산" 등 4품목의 병용 사용기준 정비 - "메타중아황산나트륨" 등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중 중복된 식품유형 정비 ○ 인용된 타법령의 명칭 변경 - 식품첨가물 제조장치에 적용된 「전기용품 안전관리법」을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으로 수정 부칙<제2020-59호, 2020. 7. 1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. 3. 5) (3)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. 3. 5) (3)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142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09호 (2020.11.13.)	○ 분말 형태 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희석제 범위 확대 -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의 정의 개정 ○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-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 및 식품등 소분용 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○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2종 개선 - "베타글리코시다아제" 등 6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 - "수산화나트륨액"의 순도시험 중 용상의 적용범위를 명확화 - "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" 등 3품목의 성분규격 중 나트륨 및 칼륨 시험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- "원자흡광광도법" 등 일반시험법 2종에 사용되는 표준용액을 시판 중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○ 비타민D2의 영문명 변경 - 비타민D_2의 영문명을 국제적 사용되는 명칭으로 변경 **부칙<제2020-109호, 2020. 11. 13.>**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143	식품의약품안전처	○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고시 제2020-117호 (2020.12.1.)	-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-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하여 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부칙<제2020-117호, 2020. 12. 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144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19호 (2021.3.9.)	○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- 일반원칙 중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 ○ 초산에틸 등 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- "초산에틸"을 식용유지 추출 및 다류 또는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- "이소프로필알콜"을 식용유지 추출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- "니신"을 두류가공품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- "소브산" 및 그 염류를 식물성크림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○ 식품용 살균제 관련 사용기준 정비 - 식품용 살균제를 직접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,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정 ○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-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 용어 정의 추가 및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조성분 규정 명확화 등 제조기준 개선 -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고,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선 ○ 5′-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시험법 및 푹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 개선 - 5′-리보뉴클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개정 - 밀납 등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사용되는 푹신아황산시액의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제조방법 개정 부칙<제2021-19호, 2021. 3. 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. 3. 5) (4)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어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시험·검사 성적서가 발급된 경우는 제외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. 3. 5) (4)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145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57호 (2021.7.1.)	○ 향료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료물질 추가 등 향료물질 정비 -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향료 품목 신설 - 천연향료 기원물질 중 중복되는 4종을 삭제하고,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2종을 추가하며, 일반명 등 3개 수정 - 합성향료물질 7종 이명 수정 및 58종 추가 지정 ○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의 사용기준 개선 - "식용색소녹색제3호" 등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단서 조항 추가 ○ 식품첨가물에 대한 구성물질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 - "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" 등 4품목의 구성품목에 대한 명칭, 영문명, 학명, INS번호 등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의 개정 ○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- "글리세린"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 - 일반시험법 중 "응고점측정법"을 고체, 액체 구분없이 시험 가능하도록 시험법 개선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부칙<제2021-57호, 2021. 7. 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II. 4. 가. 향료에 대한 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다만, II. 4. 가. 향료 중 [표 1] 및 [표 2]에 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첨가물 등에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146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94호 (2021.11.19.)	○ 혼합제제류와 식품과의 구분 명확화 등을 위한 혼합제제류 규정 개선 - 혼합제제류에 대한 희석제의 사용 목적 명시 및 혼합제제에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성분의 종류 명확화 - 혼합제제류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혼합제제류 4품목의 정의 개정 - 착향 및 발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합제제류인 향료제제 및 발색제제 신설 ○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위한 성분규격 분리·신설 -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중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을 분리하여 별도의 성분규격 신설 - 카라멜색소를 삭제하고, 제조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4개의 별도의 성분규격 신설 ○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- "메타중아황산나트륨" 등 6품목을 포도당 등 당류 제조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 -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에서 분리된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신설 - 카라멜색소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카라멜색소I 등 4품목의 사용기준 신설 - 합성향료와 천연향료를 향료로 통합함에 따라 합성향료와 천연향료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향료의 사용기준을 신설 ○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- "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" 등 5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 ○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자료 종류 명확화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- 식품첨가물 제조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사용한 경우,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명확화 부칙<제2021-94호, 2021.11.1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. 1. II. 4. 가. 및 II. 5. 가.의 개정규정 중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,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, 카라멜색소, 카라멜색소I, 카라멜색소II, 카라멜색소III, 카라멜색소IV,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,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II. 4. 나. 혼합제제류의 개정규정과 II. 5. 가의 개정규정 중 천연향료, 합성향료, 향료의 사용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일 전 II. 4. 가., II. 4. 나., II. 5. 가. 중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,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, 카라멜색소, 카라멜색소I, 카라멜색소II, 카라멜색소III, 카라멜색소IV,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,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, 혼합제제류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147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48호 (2022.6.30.)	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 부칙의 다른 고시 개정규정에 따른 셀렌산나트륨 및 아셀렌산나트륨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
148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55호 (2022.8.10.)	○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-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의 성분규격 신설 -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 ○ 스테비올배당체 등 5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성분규격 개선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-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로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 4종을 추가 - "제일인산나트륨" 등 4품목의 CAS 번호 수정 ○ 규산칼슘 등 71품목 및 영·유아식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- "규산칼슘"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 -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조제유류 등 영·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"L-글루타민" 등 아미노산 11품목 확대 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개편 및 유함유가공품 신설에 따른 "구연산제일철나트륨" 등 45품목 사용기준 정비 - 유단백알레르기 영·유아용 조제식품과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이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으로 통합됨에 따라 "5′-시티딜산" 등 5품목 품목별 사용기준 및 영·유아식 사용기준의 식품유형 정비 - "글루콘산동" 등 9품목에 대하여 영·유아식 사용기준과 중복되는 품목별 사용기준 삭제 ○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- "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" 등 5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 ○ 구아검 등 24품목의 주용도 정비 - "구아검" 등 18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주용도 추가 - "글루코노-δ-락톤" 등 6품목의 주용도 중 두부응고제를 용도별 정의와 일치하기 위하여 응고제로 변경 ○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및 분석에 사용되는 시액 제조방법 추가 - "글리세로인산칼슘"의 정량법 등 9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 - 성분규격 분석에 사용되는 NN시액 제조방법 추가 **부칙<제2022-55호, 2022.8.10.>**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149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69호 (2022.9.15.)	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 부칙의 다른 고시 개정 규정에 따른 소브산, 소브산칼륨, 소브산칼슘, 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의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
150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77호 (2022.10.28.)	○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, 특수의료용도식품, 건강기능식품,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○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 이력이 없는 네오데칸산 등 22개 성분 삭제 부칙<제2022-77호, 2022.10.28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.
151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11호 (2023.2.14.)	○ 효소제 관련 규정 정비 - 고정화 효소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 신설 - 효소제를 섭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 - 효소제 보존 및 유통기준 확대 ○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○ 합성향료물질목록 정비 - 중복 등재된 합성향료물질 1종 삭제 및 합성향료물질 4종 이명 추가 ○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-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 개정 부칙<제2023-11호, 2023.2.14 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<table>
<tr><th>순 위</th><th>부령 또는 고시번호
공포(고시) 일</th><th>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</th></tr>
<tr><td>152</td><td>식품의약품안전처
고시 제2023-29호
(2023.4.28.)</td><td>○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
- 5′-구아닐산, 5′-구아닐산칼륨, 5′-구아닐산칼슘, 5′-이노신산 5′-이노신산칼륨, 5′-이노신산칼슘
○ 변성전분 종류로 아세틸산화전분 추가
○ 동클로로필 등 식용색소 사용기준 개정
- 동클로로필 등 3품목을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) 및 캡슐류에 사용가능 하도록 개정
-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8품목을 만두피에 사용가능 하도록 개정
○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제조·가공기준과 일치, 특수의료용도식품 개편 등에 따른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27품목 사용기준 정비
○ 스모크향 이명 정비, 황산제일철 이명 추가, 염화크롬, 황산망간 CAS 번호 수정

부칙<제2023-29호, 2023.4.28 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4조(다른 고시의 개정)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. 13. 13-1 5) (3) 보존료 (g/kg) :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<table><tr><td>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
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</td><td>0.1 이하(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)</td></tr></table>제5. 23. 23-3 5) (2) 허용외 타르색소 :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(만두피에 한한다).</td></tr>
<tr><td>153</td><td>식품의약품안전처
고시 제2023-60호
(2023.9.20.)</td><td>○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
○ 산화철 신규지정
- 삼이산화철에 황색, 흑색의 산화철을 추가하여 ‘산화철’로</td></tr>
</table>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신규 지정 - 산화철을 건강기능식품(캡슐부분) 및 캡슐류에 사용가능하도록 사용기준 신설 ○ 혼합제제 희석제 범위 확대 ○ 헥산을 식품 중 유지성분 추출, 분리, 정제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○ 구연산칼슘 CAS번호 수정, γ-오리자놀 함량 단위 수정, 합성향료물질 목록 정비 ○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개선 -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 개정 **부칙<제2023-60호, 2023.9.20.>**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 1. Ⅱ. 4. 가. 삼이산화철, Ⅱ. 5. 가. 삼이산화철의 개정규정 : 2025년 1월 1일 2. Ⅱ. 4. 나. 혼합제제의 개정규정 : 2026년 1월 1일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일 전 Ⅱ. 4. 나. 혼합제제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154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82호 (2023.12.21.)	○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 ○ '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'의 정의 신설 - 무수아황산 등 6품목 사용기준 신설 ○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- 구연산이수소칼륨, 구연산일나트륨, 글루탐산마그네슘, 글루탐산칼슘, 비타민K_2, 초산칼륨, 흡착수지 ○ 식용색소청색제1호, 알긴산의 CAS번호 수정, 합성향료물질 목록 정비, 살균소독제 제조성분명 정비

순 위	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(고시) 일	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		○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- α-글루코시다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 ○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시 제출자료 중 '외국에서의 사용현황' 자료를 필요시 제출하도록 개선 부칙<제2023-82호, 2023.12.2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"식품첨가물등"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